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1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15누107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교회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구합2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3.
판 결 선 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53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2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것이고," 다음에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03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김홍섭

판사 류희상